

의안번호	제 434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북북부이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8월 19일

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43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8월 19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5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('16.10.25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“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('16. 10. 26 ~ '19. 10. 25)
- 위 치 : 충청북도 소재
- 수탁기관 :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
※ 現 수탁기관 : (사북)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(관장 나문규, '13. 10. 26 ~ '16. 10. 25)
- 위탁방법 : 재위탁
- 사업비 : 519백만원(기금 50%, 도비 50%) *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 주요사무
 -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 - 피해아동,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
 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 -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
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- ※ 단, 위탁 전 관련조례 개정의 경우 위·수탁협약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現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

- 기관 설립 경과
 -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공모(1차 : '13. 9. 27, 2차 : '13.10.14)
 - ※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단독 응모
 - 수탁대상 선정('13. 10. 23) *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선정
 -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('13. 10. 26)
-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
 - 위·수탁 기간 : '13. 10. 26 ~ '16. 10. 25 * 도 조례제정('15.10.2)
- 사업비 : 519백만원(기금 50%, 도비 50%)
- 기관위치 :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(제천시보건복지센터 4층)
- 주요업무 :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상담·치료 및 교육 등
- 조직·인력 : 13명(관장1, 상담원11, 심리치료전담인력1)
 - ※관장 : 나문규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-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, 제7조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5조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

-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-
재위탁 운영 검토보고



보 건 복 지 국
복 지 정 책 과

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재위탁 운영 검토보고

- ◇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종료예정('16.10.25.)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보고임
 - 재위탁(3년),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-

□ 기관현황

- 위 치 :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보건복지센터 4층
- 개 소 일 : '04. 7. 13.
- 위탁근거 :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-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(관장 나문규)
- 직 원 수 : 현원 13명
- 지원예산 : 519백만원(기금 50%, 도비 50%) *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기간 : '13. 10. 26. ~ '16. 10. 25. (3년)

□ 그간 운영경위

- '04. 5월 :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지정
- '08. 6월 :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지정·위탁
 - ※ 아동복지법 개정('08. 6월)으로 기존 운영자 지정 방식에서 지정·위탁 방식으로 변경, 경과규정에 의해 별도조치 없이 위탁한 것으로 봄

< 아동복지법(2008.6.13. 개정) > 제24조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,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 ② (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.

- '13. 10. 26. :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공모위탁
 - ※ 화이트아동복지회 산하 제천영육아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취소('13.8월)하고, 공모에 의해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위탁

□ 운영실적 (' 13.10월 ~ ' 16.6월말)

- 현장조사 : 신고접수 771건, 현장출동 1,565회, 사례판단 658건 등
- 사례관리 : 사후관리 대상 963건, 서비스 제공 23,903회 등
- 교육홍보 :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8,440명, 언론홍보 591회 등
- 협력사업 : 드림스타트,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연계 및 지역유관 기관(청주지검 충주지청, 제천경찰서 등)과 업무협약 체결 등

⇒ **현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, 조기발견,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학대사건 신속대응 및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**

□ 재위탁 운영검토

- 위탁방식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이 원칙이고, 재위탁이 가능함 (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 7조 제1항,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,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)
- 위탁방법(안)

구분	위탁방법	장점	단점	비고
1안	재위탁	· 기존 운영 법인의 노하우 활용 · 운영의 안정성 도모	· 장기간 위탁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	
2안	공개경쟁 (지역제한)	· 도내 실정 을 잘 아는 법인참여 · 경쟁 도입을 통한 서비스개선	· 지역 정서 상 旣 운영 법인이외 참여 기피 · 종사자 고용 불안	
3안	공개경쟁 (전국공모)	· 사업능력 및 재정 이 우수한기관참여 · 경쟁 도입을 통한 서비스개선	· 대규모 법인 유리 · 지역사회 연계 어려움 · 종사자 고용 불안	

- 검토의견 : 재위탁이 바람직
 - ① 최초 위탁공모 시 재위탁 가능성을 명시했고 기존 법인의 운영 실적과 의지가 높은 점 ② 업무의 난도가 높아 지원법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(13년 2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2개 법인만 지원) ③ 기존 법인의 노하우를 활용하고,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
 - 다만, 장기간 위탁으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점은 위탁사무 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해결가능

□ 재위탁 절차

① 의회동의	· 추진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의회동의	'16. 8월
② 수탁심사	·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- 구성 : 6~9명 정도 - 심사 :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능력 등	'16. 9월
③ 재위탁협약	· 협약체결 및 공증	'16. 10월

① 의회동의

- 동의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, 부칙 제2조
 - 당해 조례의 의회동의 규정은 '15년 신설된 것으로, '13년 최초 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재위탁(계약)시에도 의회동의 필요

<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> 제4조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동의시기 : 8월 임시회기중

② 수탁심사 (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)

- 개최시기 : '16. 9월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규칙 준용
 - 구성인원 : 6~9명정도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- 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 - 심사항목 :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사회협력 등
- 개최이유 : 재계약시에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함
 - ※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

③ 재위탁협약 체결 및 위·수탁 사무 개시 : '16. 10월

□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8월
-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16. 9월
- 재위탁협약 체결 및 위·수탁사무 개시 : '16. 10. 26.

<아동복지법>

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.

② **지방자치단체**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**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**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**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**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**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**.

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,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,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>

제5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) ①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시·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·군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**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**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(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<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**자치사무를 민간위탁**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**충청북도의회**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**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

<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>

제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**재계약 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 따라 **재계약**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**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**하여야 한다.